탄 원 서

관저 공사대금 사건 | 무죄 판단 요청 및 예비적 정상 참작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귀중
사건번호	2025고합1754
피고인	김태영 (21그램 대표)
관련 공소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감사원법 위반 등 (보도 기준)
탄원 취지	주위적으로 무죄 판단 요청 / 예비적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선처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에 올립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고인 김태영에 대한 판단이 공사 수주 과정의 사회적 논란이나 관련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김태영 개인에게 증명된 행위와 고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입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는 예산 집행과 국가계약의 공정성에 직결되므로 의혹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잘못된 행정절차가 있었다는 사실과 민간 업체 대표에게 특정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엄격한 형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소장·증거기록 일체를 직접 확인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피고인의 무고함을 사실로 보증하거나 재판부가 확인하지 않은 사정을 새 증거처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된 공소사실의 요지와 공판 보도를 전제로,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특히 신중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추가 계약과 약 16억 원의 지급을 둘러싼 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살펴 주십시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검사는 21그램의 관저 공사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안전부·조달청 담당자들을 속여 약 16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 구조가 실제로 있었다면 계약의 실질을 은폐한 정도, 담당자가 계약 조건을 판단할 때 받은 정보, 국가재정에 미친 영향은 모두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단지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정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수행의 실질과 대금 청구의 법률상 근거, 담당자가 어떤 내용을 알고 지급을 결정했는지, 피고인이 무엇을 알고 설명하거나 숨겼는지가 구체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공사비를 보전하는 성격이었다면 그 경위와 법률상 청구권의 존부를, 별도의 추가 공사대금이었다면 실제 계약 목적물과 기성 내역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 구별 없이 지급액 전부를 편취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사기죄의 기망, 착오,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을 각각 검증해 주십시오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누구에게 어떤 계약상·회계상 중요 사실이 허위로 전달되었는지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상대방이 무엇을 사실로 믿고 계약 또는 지급을 승인했는지, 해당 착오가 없었다면 같은 지급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인지, 피고인의 행위와 지급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함께 살펴져야 합니다.

추가 계약서와 견적·기성 내역, 실제 공사 범위, 현장 지시와 변경 승인, 원도급·하도급 계약, 조달·지출 결재 과정, 지급과 정산 장부를 하나의 시간 순서로 연결하여 보면 실체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실물 공사가 있었다 해도 허위 명의로 인한 기망이 가능하고, 반대로 형식적 명의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지급이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실제로 제공받은 급부의 내용과 지급의 법적 원인을 구별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3. 김태영 피고인의 고의와 공모 범위를 다른 피고인과 독립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검사 측은 민간 업체 대표가 공사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맡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허위 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엄정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체 대표라는 지위나 관련 인물과의 친분만으로 허위 계약의 구체적 내용, 국가기관을 속이려는 의사, 다른 피고인과의 공모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영 피고인이 누구와 언제 어떤 표현으로 계약 명의의 변경 또는 추가 계약을 논의했는지, 기존 공사비 초과 지출의 규모와 성격을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허위임을 알면서도 대금 청구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국가 담당자에게 무엇을 알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계약 체결권한과 민간 업체의 제안·시공 역할은 다르지만, 그 구분이 민간인의 공모 책임을 당연히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인정되는 행위와 인식의 범위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4. ‘실제 공사’와 ‘부당한 지급액’을 양립 가능한 사실로 놓고 검토해 주십시오

대금이 지급되기 전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최초 계약에 이미 포함된 작업을 추가 공사로 다시 산정한 것은 아닌지, 동일 공사비가 중복 계상되었는지, 협력업체에 지급된 금액과 업체에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는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가 있었다는 주장과 계약상 기망이 있었다는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있으므로 한쪽 설명만으로 다른 쪽을 소거하지 않는 심리를 청합니다.

피고인이 불법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한 최후진술도 그 자체로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0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처음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속여 부당이익을 얻으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당시 작성된 문서와 회계처리, 관계자 간 연락, 금전의 최종 귀속을 통해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개별 요구와 응답의 맥락을 함께 보아 주십시오

검사는 김태영 피고인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여 감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감사의 실효성은 중요하며 의도적인 자료 은폐나 허위 답변이 입증된다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무엇인지, 요구의 법적 근거와 범위, 적법한 통지와 기한, 피고인의 보유·관리 가능성, 정당한 사유와 고의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허위 진술로 지목된 답변도 질문의 정확한 문구와 답변 전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기억·인식한 내용, 다른 문서나 진술과의 객관적 불일치를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설명이 모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인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해서도, 이후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발언의 고의를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피고인의 응답행위를 다른 관계인의 감사 대응과 분리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6. 선고를 앞둔 지금, 의혹의 크기보다 증명의 정도를 우선해 주십시오

제24형사부 사건은 공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26일 변론이 종결되어 김태영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되었고, 11월 20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원인으로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점은 재판부가 기소된 각 죄명별로 행위, 고의, 인과관계 및 증거의 신빙성을 독립적으로 정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검의 주장과 피고인의 변명 중 어느 쪽도 다른 증거의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만약 일부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시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공사·계약 관련 역할, 확인된 재산상 이익과 손해, 가담 정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 및 공판에서 드러난 태도를 구분하여 책임의 정도를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재판부, 공적 예산을 다루는 과정의 불투명함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부적절한 행정과 계약 처리였고, 어떤 부분이 김태영 개인의 범죄로까지 증명되었는지 치밀하게 나누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소된 사기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의 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예비적으로 일부 책임을 인정하시더라도 확정된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중한 형벌은 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법률만이 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성일: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